

의안번호	2201187
의 퇴 인	박충권의원
회 답 일	2024. 7.9.
추 계 번호	24D1440

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¹⁾

- 개정안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날부터 1주년을 북한인권 교육주간으로 하고,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매년 2억 8,700만원씩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14억 3,500만원(연평균 2억 8,7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 계	연평균
북한인권 교육주간 (안 제2조의2 신설)	287	287	287	287	287	1,435	287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조의2 신설 (북한인권 교육주간)	북한인권증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4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날부터 1주년을 북한인권 교육주간으로 하고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인권 교육주간의 취지에 맞는 행사,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음	의무규정 재량규정

1) 이 법률안은 박충권위원이 대표발의한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201183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, 동 개정안에서는 매년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하고 있음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2조의2 신설(북한인권 교육주간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안 부칙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, 법안 심의 의결 기간 및 예산 확보 등을 고려하여,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북한인권 교육주간(안 제2조의2 신설)

- 개정안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날부터 1주일을 북한인권 교육주간으로 하고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인권 교육주간의 취지에 맞는 행사,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- 개정안에 따라 북한인권 교육주간 취지에 맞는 행사,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는 경우 통일부의 유사사례를 참조하여 매년 2억 8,700만원으로 추정
 - 유사사례로 통일부의 ‘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’사업의 내역사업인 ‘통일교육주간 운영’ 사업의 2024년 예산 2억 8,700만원(기념식 및 홍보 2억 6,000만원, 홍보물 자료 제작 1,800만원, 임차료 200만원, 전문가 포럼 등 700만원)을 준용하여 이와 동일하게 매년 2억 8,700만원으로 가정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여은구	김안나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여은구	02-6788-4673	cecil@assembly.go.kr